

## 병역지정업체(연구기관) 선정 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연구소명(업체명)	소재지	
기업규모 [ ]대 [ ]중견 [ ]중소 [ ]벤처	대표자 성명	전화번호
인터넷 주소	전자우편주소	팩스번호
연구소 인정일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)	연구소 인정번호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)	법인등록번호
기업 공개시장	기업 공개 종목코드번호	산업분류코드

연구분야	[ ]전기전자 [ ]정보통신 [ ]정보처리 [ ]소재 [ ]환경 [ ]항공우주 [ ]생명과학 [ ]건축토목 [ ]기계금속 [ ]문화 [ ]화학 [ ]기타( )
------	---

연구소 현황	건물 면적 m <sup>2</sup> / [ ]독립 [ ]미독립	연구용 자재 외 점
	연구전담요원 현황 총 명(박사 명, 석사 명, 학사 명, 전문학사 이하 명)	

※ 전문연구요원 필요(신청)인원: 명

석사 이상 연구 전담 요원 명단	직위	성명	생년월일	최종학교 (전공 및 학위)	병역사항	연구소 임명일

기간산업체 선정 [ ]	주소	업종	신규 신청 [ ]
--------------	----	----	-----------

위와 같이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업체(기관)장

직인

※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첨부서류는 뒤 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서류

신청인 (대표자) 제출서류	1. 연구기관 인정(지정)서 사본 - 과학기술원 및 자연계대학원: 대학설치인가 확인서 - 과학기술원 부설연구소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: 학칙 - 방위산업 연구기관: 위촉서 사본 - 우수집단 연구기관: 해당 연구기관 설치 또는 운영규정 2. 석사 이상 연구전담요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및 학위수여증명서(자연계 연구기관 중 석사학위 이상 연구 전담요원이 2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※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합니다.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- 기업공개시장: 거래소, 코스닥, 제3시장 등으로 적습니다.
- 연구전담요원(석사 이상 학위취득자) → 여백이 부족하면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.
  -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, 여성 등만 대상입니다(현역병입영 대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은 제외됩니다).
  -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 연구기관은 자연계 분야 학위취득자, 인문·사회계 연구기관은 인문·사회계 분야 학위 취득자입니다.
  - 실제 연구업무에 복무(파견·휴직·병가 또는 군사교육소집 중인 사람을 포함합니다)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.
  - 외국대학의 박사학위증에 학과·전공 등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석사학위증을 첨부하고, 석사학위증에도 구분이 되지 않은 경우 성적증명서를 첨부합니다.
  - 병역사항은 군복무(전문연구/산업기능요원 만료자를 포함합니다)를 마친 사람은 "군복무 필"로 적고, 그 밖의 사람은 전시근로역, 병역면제, 여성 등으로 적습니다.
- 기간산업체 선정: 기간산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란에 √표시를 하고, 주소와 업종을 적습니다(신규로 산업체와 연구기관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란에 √표시를 하고, 업종을 적습니다).

신청서 처리 절차

신청인 업체의 장	추천기관	처리기관 병무청
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

